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0. 8. 28(금) 09:30

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
(의회사무국 소관)



의회운영위원회

전문위원 박 현 신

#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

## 1. 제안경위

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30조(추가경정예산)
- 지방재정법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## 3.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[총괄]

최종예산 : 724,142,373천원(일반 709,767,406천원 특별 14,374,967천원)

(단위 : 백만원)

구	분	예산액	기정액				2회추경 (안)	비 고
			소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1회추경		
계		724,142	698,776	527,952	143,761	27,063	25,366	
일반회계		709,767	685,798	515,105	143,697	26,996	23,969	
특별회계		14,375	12,978	12,847	64	67	1,397	
	의료급여기금	495	449	448	1	-	46	
	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	890	461	461	-	-	429	
	주차장	12,990	12,068	11,938	63	67	922	

## 4.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

###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	기정액	2회추경(안)			비고
				계	증액	감액	
계		3,138,218	3,227,626	△89,408	13,962	△103,370	

- 기정예산 32억 2,762만 6천원 대비 8,940만 8천원 감액(△2.8%)된 31억 3,821만 8천원으로,

### 세부사업별 현황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		최종예산 (①+②)	기정액 (①)	예산(안) ②
편성목	주요내용			
계		3,138,218	3,227,626	△89,408
의정활동지원		75,299	88,813	△13,014
일반운영비	임시회의록 등록 프로그램 구매 등	34,883	28,321	6,562
여비	세미나, 해외비교사찰수행 출장여비 등	2,676	22,252	△19,576
구의회 청사관리		65,050	57,650	7,400
일반운영비	의전용 차량 임차	38,550	33,550	5,000
자산취득비	무선마이크 구매	10,500	8,100	2,400
의회비지원		658,489	717,879	△59,390
의회비	의원 세미나, 국내외여비 등 의장단 업무추진비, 공동경비	658,489	717,879	△59,390
인력운영비		2,054,238	2,056,802	△2,564
인건비	호봉제 → 임기제 직원 교체(보수 조정)	1,698,290	1,700,854	△2,564
기본경비		137,629	159,469	△21,840
여비	직원 기본업무수행 출장 여비	52,416	74,256	△21,840

## 5. 검토 의견

○ 의회사무국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,

- 코로나19에 따른 구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의 국내세미나 및 국외출장 여비와 의장단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고,
- 회의내용을 더욱더 빠르게 구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「임시회의록 등록 시스템」 구축(보강)사업 예산 반영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『지방자치법』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### 제130조 (추가경정예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## 『지방재정법』

[시행 2020. 1. 1.] [법률 제16857호, 2019. 12. 31., 일부개정]

### 제45조 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[전문개정 2011.8.4.]